

「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」 2015년도 하반기 시행계획(신청·접수)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고

「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6조의2에 따라 2015년 하반기 “농림식품신기술인증” 신청·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7월 21일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

『농림식품신기술(NET)인증제』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

1. 신청자격

- 농림식품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(기업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
2. 신청 대상 기술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(이하 “실증화시험”이라 한다)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,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
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

※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

3. 인증 기술분야

기술분야		세부 기술(인증대상 기술 정의)
대분류	중분류 (전문위 구성 기준)	
1. 농업 기술 (4개)	1-1 유전자원·육종	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, 육종 기술, 종자생산·관리 기술 등
	1-2 재배·생산	식량·원예·특용작물 재배 기술,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
	1-3 유통·관리	식량·원예·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, 포장 등 품질유지·관리 기술,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, 검사·검역 기술 등
	1-4 생명공학	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·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 기술
2. 축산·수의 기술 (3개)	2-1 종축·생산	동물(가축) 육종·번식 기술, 종축개량 기술, 경제 축종 선발기술, 초지·조사료, 사료 및 첨가제, 영양·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
	2-2 유통·관리	축산물 유통·품질관리, 도축·저장기술, 축산물 위생·안전 관리 기술 등
	2-3 동물질병·수의약품	동물질병 예방·진단·진료·치료·검역기술, 인수공통감염병 관리, 수의약품·공중보건 기술 등
3. 식품 기술 (3개)	3-1 식품가공·제조	식품화학, 식품미생물·발효, 식품 가공·공정 기술, 식품 포장·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
	3-2 기능성·영양	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, 기능성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
	3-3 위생·안전	식품 가공·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·안전성 확보기술, 식자재 위생·안전 기술 등
4. 임업 기술 (2개) ※목재 생산·가공 관련 기술 제외	4-1 임산물 재배·생산	임산물 육종·양묘 기술, 임산물 재배·생산성 향상 기술, 신규 임산자원 활용·재배 기술
	4-2 임산물 가공·유통	임산물 수확 후 관리·저장기술, 임산물 가공기술,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,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
5. 농림식품 기반기술 (3개)	5-1 토목·시설·환경	농업수리·관개·배수, 토목 설계·구조·시공, 농지 조성·보전기술, 농업환경·생태계 조절·관리·정화기술, 재해·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
	5-2 농자재	농약(화학·생물), 비료,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
	5-3 농림식품 기계·시스템	농업기계·시스템, 축산기계·시스템, 임업기계·시스템, 식품기계·시스템, 농식품 시설 설계·환경 제어 기술,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
6. 농림식품 융복합 (3개)	6-1 농생명 신소재·시스템	바이오칩·센서, 나노·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 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
	6-2 농생명 에너지 자원	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, 관리기술
	6-3 농생명 정보·전자	농림축산식품의 생산·유통 유틸리티스 정보화 기술,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
대분류 6개 기술	중분류 18개 기술	

*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목재제품 신기술 인증”은 별도 시행(산림청·한국임업진흥원) 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. 단, 목재 이외의 임업 관련 기술의 경우 포함

4.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

가.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기간

- 공고 기간 : 2015. 7. 21.(화) ~ 2015. 8. 19.(수), 18:00 까지(30일간)
- 접수 기간 : 2015. 8. 5.(화) ~ 2015. 8. 19(수), 18:00 까지(15일간)

나. 신청 방법

-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(www.newat.or.kr)에 온라인 신청·접수
 -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기술(NET)인증 신청 서식,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및 신청·접수
 - 제출서류는 인증시스템 업로드 후 1차 심사·평가 진행 시 15부 별도 제출

다. 제출 서류

- 신기술(NET)인증 신청(신규)
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농림수산물과학 기술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
구비서류	③ 사업자등록증(필수) 또는 공장등록증(해당 시 제출) ④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 ⑤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(해당 시 제출)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그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 ⑦ 국제표준기구(ISO)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(해당 시 제출)	사본 또는 요약설명서, 보고서 첨부
참고사항	○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<u>기술명으로 신청</u> 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○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○ 접수한 신청 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	

라. 신기술(NET)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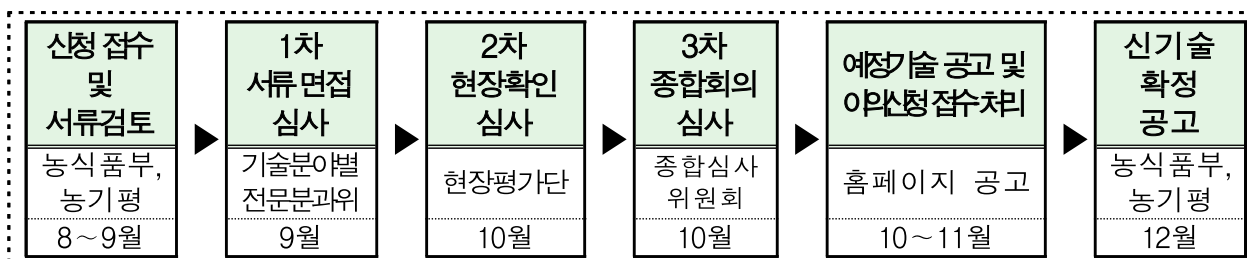
- 신청대상 :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
- 접수기간 :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
- 제출서류
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② 신청기술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
구비서류	③ 사업자등록증(필수) 또는 공장등록증(해당 시 제출) ④ 신청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 ⑤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(해당 시 제출)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 그 증빙 자료(해당 시 제출) ⑦ 국제표준기구(ISO)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(해당 시 제출)	사본 또는 요약설명서, 보고서 첨부

5. 심사·평가 절차

-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심사·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「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」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-64호)을 적용함
 - 1차 서류·면접 심사 : 신청기술의 기술성, 경제성, 경영성 평가 등
 - 2차 현장·확인 심사 : 1차 심사결과의 현장 확인, 시제품 성능, 품질경영체계 평가 등
 - 3차 종합 회의 심사 : 1·2차 심사의 적정성,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평가
- ※ 심사·평가 추진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, 심사·평가 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인의 진행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(www.newat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○ 신기술(NET) 인증 심사 절차 및 추진 일정



○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추진 일정



※ 연장 신청의 경우, 1차 심사결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시 전원합의를 통해 2차 및 3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

6. 심사비용

-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: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
 - 1차(서류·발표)심사 : 20만원(1차 심사 진행 전 온라인 납부)
 - 2차(현장·확인)심사 : 50만원(2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, 개별통보)
 - 3차(종합회의)심사 : 20만원(3차 심사 확정 시 온라인 납부, 개별통보)

7. 행정사항

-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심사·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에 따라 신청·접수 이후 신기술인증 신청 서류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(선행기술 및 관련 특허 분석 자료 등)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
- 인증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의 수정·보완 및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시 「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」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반려 조치될 수 있음

8.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

-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설명회 개최
 - 일시 : 2015. 8. 4.(화) 14:00 ~ 16:00 (예정)
 - 장소 :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별관 회의실(7층)

9. 문의처

- 문의 :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)201-2455~6
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기술인증팀 031)420-6791~4
- 이메일 : renoham@ipet.re.kr, dalrayo12@ipet.re.kr
-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(www.newat.or.kr) 및 농기평 홈페이지(www.ipet.re.kr) 사업공고 참조